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의 대응과 문서 행정

노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고문서학 전공
nothing217@aks.ac.kr

- I. 머리말
 - II. 일식과 월식 이전 문서 행정
 - III. 일식과 월식의 구식(救食)
 - IV. 일식과 월식 이후 문서 행정
 - V. 맷음말
-

I . 머리말

일식과 월식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해와 달의 위치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 요즘에는 일식과 월식의 과학적인 원리가 밝혀져서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근대 시기에는 일식과 월식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예를 들어 『논어』에서 “군자의 허물은 일식·월식과 같아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본다.”라고 하여 군자의 허물을 일식과 월식으로 비유하였다.¹ 『논어』에 수록된 내용은 조선시대 신하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上疏)나 각종 문장에 많이 인용되었다. 조선 전기에 세종은 일식과 월식이 큰 천변(天變)이므로 음악을 끊고 형벌로 죽이는 것을 없애며 도살을 금지하고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여 천변을 두려워할 것을 명하였다.²

1554년(명종 9)에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에서 해가 달에 가려진 일식은 음(陰)이 양(陽)을 이기게 되어 무거운 재변(災變)으로 설명하였다. 반대로 달이 해와 마주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월식은 양이 음을 이기게 되어 가벼운 재변으로 설명하였다.³ 이와 같이 월식보다 일식을 큰 재변으로 인식한 것은 일식과 월식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구식(救食)을 거행할 때에 국왕의 친림 여부와 의주(儀註)에 반영되었다.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의 선행 연구는 역사학·한문학·음악학의 연구 성과가 있다. 역사학에서는 조선시대 일월식론(日月食論)의 변화를 조선

1 『論語集註』 子張：子貢曰，君子之過也，如日月之食焉。過也，人皆見之。更也，人皆仰之。

2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12월 20일(신해)：傳旨禮曹。日月食，天變之大者，宜斷音樂，去刑戮，禁屠殺，停朝市，以懼天變。其與詳定所提，調擬議以啓。

3 『經國大典註解』 後集 禮典 取才條 內篇·日月食·木火土金水星：日月食，凡日月之交，月行黃道，而日爲月所掩，則日食，是爲陰勝陽，其變重。日月同度于朔，月行不入黃道，則雖會而不食。月之行在望，與日對衝，月入于暗虛之內，則月爲之食，是陽勝陰，其變輕。

전기에 주자학적 일월식론이 정착되는 과정과 조선 후기에 주자학적 일월식론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하였다.⁴ 조선시대 일월식론에 대해 마땅한 일월식이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시 불식(當食不食)으로 논의하고 그 의미를 연구한 성과도 있다.⁵ 또한 18세기 중반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주고받은 일식과 월식의 자문(咨文)이 조선 정부와 관상감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⁶ 한문학에서는 일식과 월식을 소재로 한 한시(漢詩)의 양상과 의미를 연구하였다. 일식과 월식에 대한 한시가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중세적 재이관(災異觀)의 반영과 공적 서정의 투영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시를 통해 조선 후기에 재이관과 과학적 인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절충하는 양상을 연구하였다.⁷ 음악학에서는 일식과 월식을 구하는 구일식의(救日食儀)와 구월식의(救月食儀)를 살펴보고 의식에서 사용된 악기·깃발·병장기 등의 도판을 제시하며 그 의미를 연구하였다.⁸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에 대해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에서 어떻게 대응하였고, 일식과 월식의 전후에 발급하고 수취한 문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 아문에서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국왕의 결재를 받은 후에 지방 아문에 전달하는 문서, 지방 아문에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후에 보고하는 문서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일식과 월식의 과학적인 원리와 천체 현상보다는 일식과 월식을 전달하고 보고하는 문서 행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4 구만옥, 「朝鮮後期 日月蝕論의 變化」, 『韓國思想史學』 19(2002).

5 경석현, 「조선후기 當食不食 논의와 그 의미」, 『동방학지』 189(2019).

6 김슬기, 「18세기 중반 조선 일월식 계산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청나라 일월식 자문」, 『한국과학사학회지』 42(2020).

7 이국진, 「일식과 월식을 소재로 한 한국 한시의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 20(2016).

8 송지원, 「조선시대 일식 월식을 구(救)하는 의례」, 『문헌과 해석』 40(2007).

II. 일식과 월식 이전 문서 행정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의 업무는 조선 초기에 서운관(書雲觀)에서 담당하였고, 세조 이후에 관상감(觀象監)에서 담당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태조는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서운관을 설치하여 천문(天文)·재상(災祥)·역일(曆日)·추택(推擇)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⁹ 1466년(세조 12) 1월에 세조는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개칭하였고¹⁰, 이후 조선 후기까지 관상감에서 일식과 월식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471년(성종 2) 6월에 관상감은 성종에게 요청하여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여 예측하는 관원을 군직에서 체아직으로 임명하였다.¹¹ 『경국대전』에는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여 예측하는 관상감 관원에게 서반의 체아직 1자리를 별도로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²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일식단자(日食單子)와 월식단자(月食單子)를 국왕에게 입계(入啓)하였다. 그런데 1769년(영조 45) 12월에 영조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입계하면 지체되기 때문에 5개월 전에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입계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¹³ 『대전통편』에는 관상감에서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

9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1392) 7월 28일(정미): 書雲觀, 掌天文·災祥·曆日·推擇等事.

10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1466) 1월 15일(무오): 書雲觀改稱觀象監.

11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1471) 6월 30일(신미): 觀象監提調啓, [...] 一. 吏典膳錄內, 日·月食述者, 勿得屬散. 故恒敍軍職, 今詳定時, 遷兒革除未便. 請依前例, 紿遷兒, 一敍用. 從之.

12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觀象監: 掌天文·地理·曆數·占籌·測候·刻漏等事. (提調二員. [...] ○日·月食述者, 別給西班牙遷兒一.)

『經國大典註解』 後集 吏典 天官 家宰 觀象監條: 日·月食述者, 日月食推算之人.

13 『승정원일기』 1299책, 영조 45년(1769) 12월 19일(정묘): 凤漢曰, 曾前日食單子, 例爲三朔前入啓, 而近有稽滯之教矣. 卽聞日官言, 則明年五月, 亦當日食云, 單子入啓, 依前前期三朔乎, 其或以五朔舉行乎. 上曰, 以五朔, 定式爲之, 可也.

기 5개월 전에 국왕에게 입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⁴ 또한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기 7일 전에도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다시 국왕에게 입계하였다.¹⁵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는 실물 문서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승정원의 승지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기 7일 전에 관상감의 초기(草記)를 입계한 『승정원일기』 기사를 통해 관상감이 올린 초기로 국왕에게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¹⁶

관상감은 국왕뿐만 아니라 왕비와 왕세자에게도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올렸다. 국왕에게는 승정원에, 왕비에게는 차비문(差備門)에, 왕세자에게는 세자시강원에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올렸다. 또한 관상감은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국왕에게 입계하기 전에 몇 건의 단자를 작성하여 삼정승과 관상감제조에게 올렸고 국왕에게 입계한 후에 승정원과 세자시강원 및 천문학 당상관에게 올리고 예조에 보고하였다.¹⁷

관상감이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고 예조에 보고할 때에는 첨정(牒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

14 『大典會通』 禮典 雜令: 《增》[…] 日·月食單子, 前期五朔入啓.

15 『銀臺便攷』 禮房攷 日月食: 日月食, 前期五朔, 食單子修正, 入啓, 啓下後, 知委八道, 前期七日, 更入食單子.

16 『승정원일기』 64책, 인조 16년(1638) 5월 7일(기사): 閔應亨, 以觀象監官員, 以提調意啓曰, 今五月十五日丁丑, 定望, 夜月食, 內篇法及大明曆法, 如有虧缺之形, 卽令放火後, 救食, 何如. 傳曰, 依啓.

『승정원일기』 186책, 현종 5년(1664) 11월 24일(신해): 李俊壽,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來十二月初一日日食, 以四篇算法推之, [...] 如有虧缺之形, 卽令放火後, 救食, 何如. 傳曰, 允.

17 『書雲觀志』 권2 交食: 前期五朔, 先修時憲法, 呈于各殿宮.[大殿呈承政院, 內殿呈差備門, 世子宮呈侍講院. 入啓前, 為單子幾件, 呈三相公·兩提調, 入啓後, 呈承政院·侍講院及天文學堂上任官, 仍報禮曹.]

18 고문서에 수록된 일식과 월식의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食分: 해와 달이 가려진 정도 初虧: 일식과 월식의 시작

食既: 달이 가려지기 시작한 때 食甚: 해와 달이 가장 많이 가려진 때

生光: 달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때 復圓: 해와 달이 다시 둥글어진 때

① 관상감의 첨정에 ‘오는 12월 16일 병진 새벽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이니 時憲法에 달의 食分은 17분 19초입니다. 初虧는 밤 子初 3각 14분에 정동쪽에 서 처음 가려지고 食既은 子正 3각 12분이며 食甚은 丑初 3각 1분이고 生光은 丑正 2각 5분이며 復圓은 寅初 2각 3분이고 정서쪽에서 둉글어집니다. 월식의 시간을 계산하면 14각 4분이고 食甚의 宿次는 달이 黃道의 鶴火宮 6도 2분에 위치하는데 鬼宿 2도 45분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¹⁹

② 관상감의 첨정에, ‘오는 6월 초1일 무인 초하루에 일식이 있을 것이니 時憲法에 해의 食分은 7분 23초입니다. 初虧는 申初 2각 6분에 서북쪽에서 처음 가려지고 食既은 申正 2각 8분에 정북쪽에서 가장 많이 가려지며 復圓은 酉初 2각 4분으로 동북쪽에서 둉글어집니다. 일식의 시간을 계산하면 총 7각 14분이고 食甚의 宿次는 해가 黃道의 鶴首宮 15도 38분에 위치하는데 井宿 12도 31분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²⁰

①과 ②는 관상감에서 월식과 일식을 예측한 후 예조에 보고하는 첨정으로 ①은 1822년(순조 22) 12월 16일 월식을 예측한 것이고 ②는 1842년(현종 8) 6월 1일 일식을 예측한 것이다. 관상감은 해와 달의 가려진 정도, 초후(初虧)·식기(食既)·식심(食甚)·생광(生光)·복원(復圓)의 시각과 위치, 일식과 월식의 시간, 해와 달의 위치 등을 예측하고 첨정을 올려 예조에 보고하였다. 예조는 관상감의 첨정을 점련(粘連)한 계목(啓目)으로 국왕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關西啓錄』 1822년(순조 22) 12월 16일: 觀象監牒呈內, 來十二月十六日丙辰曉望, 月有食之, 時憲法月食分, 十七分十九. 初虧夜子初三刻十四分, 初虧正東, 食既子正三刻十二分, 食甚丑初三刻一分, 生光丑正二刻五分, 復圓寅初二刻三分, 復圓正西, 計食限內, 凡十四刻四分, 食甚宿次, 月離黃道鶴火宮六度二分, 爲鬼宿二度四十五分事.

20 『慶尙監營啓錄』 1842년(현종 8) 6월 1일: 觀象監牒呈內, 來六月初一日戊寅朔, 日有食之, 時憲法日食分, 七分二十三抄. 初虧申初二刻六分, 初虧西北, 食既申正二刻八分, 食甚正北, 復圓酉初二刻四分, 復圓東北, 計食限內, 凡七刻十四分, 食甚宿次, 日躔黃道鶴首宮十五度三十八分, 爲井宿十二度三十一分事.

①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접련하였습니다. 지난번 오는 6월 15일 임진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이니 전례에 따라 구식하고 월식의 형상은 그림을 그려 빨리 啓聞하려는데, 같은 날에 조정과 시장을 정지하고 형벌로 죽이는 것을 없애며 도살을 금지하고 음악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京外에 일체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광 22년(1842, 헌종 8) 2월 초11일 우승지 신 김대근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啓下하였습니다.²¹

② 예조의 계목에 ‘첩정을 접련하였습니다. 지난번 오는 5월 초1일 갑신 초하루에 일식이 있을 것이니 전례에 따라 구식하고 일식의 형상은 그림을 그려 빨리 계문하려는데, 같은 날에 조정과 시장을 정지하고 형벌로 죽이는 것을 없애며 도살을 금지하고 음악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京外에 일체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치 11년(1872, 고종 9) 1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이교복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계하하였습니다.²²

①은 1842년(헌종 8) 2월에 예조에서 헌종에게 올리는 계목이고, ②는 1872년(고종 9) 1월에 예조에서 고종에게 올리는 계목이다. 예조 계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상감의 첩정을 접련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언급하였다. 이어서 전례에 따라 구식하고 일식과 월식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 보고하는 내용과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날에 조정과 시장을 정지하고 형벌로 죽이는 것을 없애며 도살을 금지하고

21 『慶尙監營啓錄』 1842년(헌종 8) 6월 16일: 曹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 向前來六月十五日壬辰望, 月有食之, 依例救食, 食體圖畫, 趁卽啓聞爲白乎矣. 同日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斷音樂事, 京外一體知委, 何如. 道光二十二年二月十一日 右承旨臣金大根次知,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22 『慶尙監營啓錄』 1872년(고종 9) 5월 3일: 曹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 向前來五月初一日甲申朔, 日有食之, 依例救食, 食體圖畫, 趁卽啓聞爲白乎矣. 同日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斷音樂事, 京外一體知委, 何如. 同治十一年正月初十日, 同副承旨臣李教復次知,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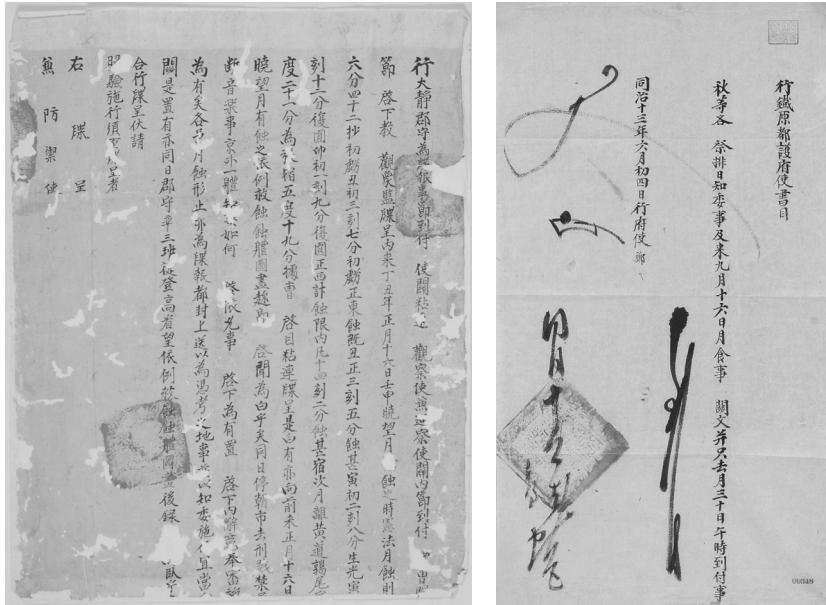
음악을 중단하는 내용을 경외(京外)에 알리는 것에 대해 국왕에게 아뢰었다. 승정원의 승지가 담당하여 예조 계목을 국왕에게 입계하였고 국왕은 아뢴 대로 윤허한다는 내용으로 결재하였다.

국왕이 예조 계목에 결재를 하면 예조는 계목의 내용을 경외(京外)에 관(關)으로 전달하였다. 경외에서 경(京)은 경관직인 정2품 수원부·광주부 유수와 종2품 개성부·강화부유수이고, 외(外)는 외관직인 종2품 관찰사·통제사이다. 예조와 동등한 정2품아문이거나 예조보다 낮은 종2품아문이기 때문에 관으로 일식과 월식의 날짜, 일식과 월식에 시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 예조가 보낸 관은 관상감 첨정과 예조 계목의 내용을 인용한 후에 국왕이 결재한 내용을 받들어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

5월 18일 到付. 예조에서 상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啓下하신 관상감의 첨정에, ‘오는 9월 15일 임신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이니 [...] 奎宿 9도 46분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첨정의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첨정을 점련하였습니다. [...] 京外에 일체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경 14년(1809, 순조 9) 5월 초8일 동부승지 신 서준보가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계하하였습니다. 계하한 내용을 받들어 살펴서 시행할 일입니다.²³

예조의 관을 받는 관찰사는 지방 수령에게 관을 보내서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전달하였다. 지방 수령은 관찰사의 관을 접수하고 관찰사에게 첨정(牒呈)과 서목(書目)을 올려 접수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대정 군수 첨정과 철원부사 서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禮房謄錄』 1809년(순조 9) 5월 18일: 五月十八日到. 禮曹爲相考事. 節啓下教. 觀象監牒呈內, 來九月十五日壬申望, 月有食之, [...] 爲奎宿九度四十六分事據, 曹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 [...] 京外一體知委, 何如. 嘉慶十四年五月初八日, 同副承旨臣徐春輔次知,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事.



① 1877년(고종 14) 大靜郡守 李友植 牒呈

② 1874년(고종 11) 鐵原府使 鄭雲參 書目

그림1-대정군수 첨정과 철원부사 서목

① 행 대정군수가 牒報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도착하여 접수한 제주목사의 關에 접련된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의 關에 “이번에 도착한 예조의 關에 ‘이번에 啓下하신 관상감의 첨정에, 「내년 정축년(1877) 정월 16일 임신 새벽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이니 [...] 張宿 5도 19분이 됩니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예조의 계목에 「첨정을 접련하였습니다. 지난번 오는 정월 16일 임신 새벽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이니 [...] 京外에 일체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아뢴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계하한 내용을 받아들여 살펴서 시행할 일이다.’라고 하였는데, 각 읍에 월식의 형지를 또한 첨정으로 보고하고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어 증빙할 근거로 삼으라는 내용을 잘 알려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관찰사) 關이었습니다.²⁴

② 행 철원도호부사 서목.

가을 각 제사의 배정된 날짜를 알려주는 내용 및 오는 9월 16일 월식에 대한 내용의 關文을 모두 지난 달 30일 오시에 도착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동치 13년(1874, 고종 11) 6월 초4일 행 부사 鄭雲參[착명]

(題辭) 도착하여 접수한다. 동월 12일 감영에서 도사 겸사[착압]²⁵

①은 1877년(고종 14) 1월에 대정군수 이우식(李友植)이 제주목사에게 월식을 보고하는 첨정이다. 첨정에는 전라도관찰사가 제주목사에게 월식의 날짜를 전달하고 각 읍에서 월식의 형지를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는 1874년(고종 11) 6월에 철원부사 정운삼(鄭雲參)이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는 서목이다. 서목을 통해 월식의 날짜를 전달하는 강원도관찰사의 관(關)을 접수하고 첨정과 서목을 올려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수령이 관찰사에게 첨정과 서목으로 보고하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기 전에 중앙 아문에서 국왕에게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보고하는 문서 행정과 중앙 아문에서 지방 아문으로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전달하는 문서 행정을 완료하였다.

24 行大靜郡守爲牒報事. 節到付, 使關粘連, 觀察使兼巡察使關內, 節到付, 禮曹關□[內], 節啓下教, 觀象監牒呈內, 來丁丑年正月十六日壬申曉望, □[月]有蝕之, [...] 爲張宿五度十九分據, 曹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 向前來正月十六日□□[壬申]曉望, 月有蝕之, [...] 京外一體知委, 何如.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爲有矣, 各邑月蝕形止, 亦爲牒報, 都封上送 以爲憑考之地事, 竝以知委施□[行], 宜當□□[向事]. 關是置有亦.

25 行鐵原都護府使書目. 秋等各祭排日知委事, 及來九月十六日月食事, 關文并只, 去月三十日午時到付事. 同治十三年六月初四日 行府使鄭[着名] (題辭) 到付. 同月十二日 在營 都事兼使[着押] [江原道觀察使之印] 1顆

III. 일식과 월식의 구식(救食)

관상감이 예측한 날짜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에서는 각각 일식과 월식을 살펴본 후에 구식을 거행하여 대응하였다. 이전 고려시대에는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으로 『고려사』에 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가 있었다.²⁶ 조선 전기에는 세종 연간에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마련하였다. 1433년(세종 15) 7월에 예조는 세종에게 일식을 구식하는 의주(儀註)를 아뢰었고²⁷, 이것은 『세종실록』 오례(五禮) 구일식의(救日食儀)에 반영되었다.²⁸ 이후 1474년(성종 5) 편찬된 『국조오례의』 구일식의는 관직 제도의 변화에 따라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판통례(判通禮)를 좌통례(左通禮)로, 봉례랑(奉禮郎)을 인의(引儀)로 수정하여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정리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구일식의(救日食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

그날 액정서는 전하의 禤位를 근정전 계단 위에 북쪽 근처 남향으로 설치하고 香案을 그 앞에 설치한다. 典樂署의 典樂이 북 3개를 근정전 계단 위에 남쪽 근처에 둔다.[청색 북은 동쪽에 있고 적색 북은 남쪽에 있으며 백색 북은 서쪽에 있다.] 병조정랑이 깃발 3개를 북이 있는 곳 안에 진열하고 병기 3개를 북이 있는 곳 밖에 진열한다.[청색·적색·백색의 깃발 3개를 각각 방위에 따라 진열하는데, 矛는 동쪽에 있고 戟은 남쪽에 있으며 鐵은 서쪽에 있다.]

26 『高麗史』 卷64 志 卷第18 禮6 救日月食儀.

27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1433) 7월 20일(신미): 禮曹啓救日食儀注. 其日有司設殿下禰位於勤政殿階上南向. 典儀設侍臣位於殿庭東西, 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 始虧, 執事伐鼓, 明復而止. 夜食無救.

28 『세종실록』 133권, 五禮 軍禮儀式 救日食儀.

典儀가 侍臣의 자리를 근정전 뜰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모두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다르게 하여 두 줄로 서서 서로 마주보며 북쪽을 위쪽으로 한다. [食度(일식이 일어나는 부분)가 남쪽에 있으면 시신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식도가 동쪽에 있으면 시신은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며 식도가 서쪽에 있으면 시신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한다.]

해가 가려지기 5각 전에 병조는 여러 衛를 거느리고 군사를 평상시와 같이 배열하며 시신들은 각각 素服을 입고 근정문 밖에 나아가 동쪽·서쪽에 나누어 평상시와 같이 차례대로 선다. 3각 전에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 伺候한다. 左通禮가 합문 밖에 나아가 고개를 숙여 옆드리고 끓어앉아 中嚴을 啓請하면 전하가 소복을 입고 사정전에서 나오는데, 繖扇과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으로 한다. 1각 전에 引儀가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東偏門과 西偏門을 지나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좌통례가 고개를 숙여 옆드리고 끓어앉아 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선과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으로 한다. 전하가 육위에 이르러 해를 향해 앉는다.

관상감이 변고가 있는 것을 아뢰면 司香[소복을 입는다.]이 향을 피우고 전악[인]이 소복을 입는다.]이 북을 치는데 밝음이 회복된 후에 그친다. 좌통례가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끓어앉아 내전으로 돌아가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輿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시위는 올 때의 의식으로 한다. 인의가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그날에 백관들은 각각 본 아문에서 관아 앞에 북을 두고 모두 소복을 입고서 북 뒤에 두 줄로 해를 향해 선다. 해가 처음 가려지면 향을 피우고 북을 치는데, 다시 밝아지면 북을 그친다. 밤의 일식은 구식하지 않는다. ○외관이 일식을 구식하는 것은 동일하다.]²⁹

29 『國朝五禮儀』(장서각 K2-2113) 권6, 軍禮 救日食儀: 救日食儀. 其日掖庭署設殿下褥位於勤政殿階上近北南向, 設香案於其前. 典樂署典樂置鼓三於殿階上近南.[青色鼓在東, 赤色鼓在南, 白色鼓在西.] 兵曹正郎陳麾三於鼓內, 兵三於鼓外.[青赤白三色麾, 各從方位陳之, 矛

『국조오례의』의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먼저 액정서에서 국왕의 육위(禡位)와 향안(香案)을 근정전 계단 위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청색·적색·백색의 북과 깃발, 모(矛)·극(戟)·월(鉞)의 병기를 동·남·서쪽에 진열하였다. 시신(侍臣)의 자리는 식도(食度), 즉 일식이 일어나는 부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이어서 일식이 시작되기 5각 전에는 병조가 평상시와 같이 군사를 배열하고 시신은 소복(素服)을 입은 후에 근정전 밖에 서 있었다. 3각 전에는 호위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이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국왕이 있는 사정전으로 나아가면 국왕이 소복을 입고 사정전에서 나왔다. 1각 전에는 시신이 근정문으로 들어와 자리에 위치하고 국왕이 육위에 도착하여 해를 향해 앉으면 준비가 끝났다. 일식이 시작되어 관상감이 변고가 있는 것을 아뢰면 소복을 입은 사향(司香)이 향을 피우고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악(典樂) 3인이 북을 쳤다.³⁰ 일식이 끝나면 좌통례가 국왕에게 내전에 돌아갈 것을 아뢴 후에 국왕이 내전으로 돌아갔다.

국왕이 친립하는 구식에 참석하지 않은 중앙 관원은 일식이 시작되기 전에 소복을 입고서 관아 앞에 북을 두고 북 뒤에 두 줄로 해를 향해 서 있었다. 일식이 시작되면 향을 피우고 북을 쳐서 구식하는 의식을 거행하

在東，載在南，鉞在西。] 典儀設侍臣位於殿庭東西，俱每等異位重行，相向北上。[食度在南，侍臣分東西相向，食度在東，侍臣俱在西東向，食度在西，侍臣俱在東西向。] 未虧前五刻，兵曹勒諸衛列軍士如常，侍臣各具素服，就勤政門外，分東西序立如常。前三刻，諸護衛之官及司禁，各具器服，詣思政殿閣外伺候。左通禮詣閣外俯伏跪，啓請中嚴，殿下具素服，御思政殿，繖扇侍衛如常儀。前一刻，引儀分引侍臣，由東西偏門入就位。左通禮俯伏跪啓外辦，殿下乘輿以出，繖扇侍衛如常儀。殿下至禡位向日坐。觀象監啓有變，司香[素服]焚香，典樂[三人素服]伐鼓，明復而止。左通禮進當座前俯伏跪，啓請還內，殿下乘輿還內，侍衛如來儀。引儀分引侍臣出。[其日百官，各於本司，置鼓于廳事前，皆以素服，立於鼓後，重行向日而立。始虧，焚香伐鼓，明復而止。夜食無救。○外官救食同。]

³⁰ 일식에 사용되는 북은 雷鼓 또는 晉鼓로 추정되며, 북을 치는 이유는 해가 陽에 속하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든 북을 쳐서 陽의 기운을 돋기 위함이다. (송지원, 앞의 논문, 122쪽, 127쪽)

였는데, 밤에 일어나는 일식은 구식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국조오례의』 구일식의에 따라 거행하였으나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42년(영조 18) 5월 1일에 영조는 일식을 구식하는 의주의 보완을 명하였다. 영조는 관상감의 하위 관원 1명이 국왕에게 일식을 아뢰는 것은 사체(事體)가 가볍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의주에 붙인 첨지(籤紙)에 따라 거행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국조오례의』를 증수할 때에 의주의 구문(舊文)은 두고 수정한 내용은 주석으로 붙일 것을 명하였다.³¹ 같은 날에 영조는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친립하여 거행할 때에 익선관(翼善冠)·참포(鬱袍)·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입고 참석하였다.³²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 친립구일식의에 반영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립하여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

그날 액정서는 전하의 禱位를 인정전 계단 위에 북쪽 근처 남향으로 설치하고 香案을 그 앞에 설치하며 또 옥위 동쪽에 小次를 설치한다.[적당한 장소를 따른다.] [...] 左通禮가 합문 밖에 나아가 고개를 숙여 엎드리고 끓어앉아 中嚴을 계청하면 전하가 翼善冠·鬱袍·烏犀帶·白皮靴를 입고 內殿에서 나오는데, 繖扇과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으로 한다. [...] 근처에서 모시는 신하[淺淡服]을 입는다.] 가 나누어 들어가 좌우에 고개를 숙여 엎드리고 사관이 그 뒤에 있다. 해가 장차 가려질 때에 관상감 제조가 어좌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여 엎드리

31 『승정원일기』 944책, 영조 18년(1742) 5월 1일(기묘): 日將虧, 只該監一小官奏達, 事體輕矣。於儀注付籤而下, 自今依此舉行, 而其意卽曾子三省之意, 時刻差晚, 亦恐懈怠, 而自勉之意也。此後儀注依此修正以入, 五禮儀增修時存舊文, 此儀注附注, 可也。

32 『승정원일기』 944책, 영조 18년(1742) 5월 1일(기묘): 壬戌五月初一日辰時, 上御仁政殿階上。 [...] 上具翼善冠·鬱袍·烏犀帶·白皮靴, 自偏門出, 乘輿至仁政殿階上, 降輿至禱位向日坐。

고 끓어앉아 ‘해가 장차 가려질 것이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수신하고 반성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아뢴다. 司香 2인[천담복을 입는다.]이 향을 피우고 典樂 3인[천담복을 입는다.]이 북을 친다. 해가 가장 많이 가려질 때에 제조가 또 어좌 앞에 나아가서 ‘해가 장차 가장 많이 가려질 것이니 더욱 경계하고 반성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계청한다. 해가 장차 다시 둉글어질 때에 또 끓어앉아 ‘해가 장차 다시 둉글어질 것이니 그 반성을 계을리 하지 말 것을 청합니다.’라고 아뢴다. 해가 다시 둉글어지면 북을 그친다. [...]

[금상 임술년(1742, 영조 18)에 옛 의식에서 단지 관상감의 하위 관원 1명이 아뢰는 것은 事體가 가벼우니 관상감의 제조가 거행할 것을 명하고 하루 전에 致齋하는 것을 定式으로 하며 御製한 세 번 아뢰는 말에 경계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붙인다.]³³

조선 후기 『국조속오례의』의 친립하여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에서 청색·적색·백색의 북과 깃발, 모(矛)·극(戟)·월(鉞)의 진열, 일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북을 치는 것은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일식을 구식하는 장소는 조선 전기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 후기에 창덕궁 인정전으로 변화하였고, 고종 때에 다시 근정전에서 거행하여 최종적으로 정전(正殿)의 계단으로 정하였다.³⁴ 또한 국왕의 유희 동쪽에 소차(小次)를 설치하여 국왕이 잠시 쉬기 위한 임시 장막을 마련하였다. 구식 할 때에

33 『國朝續五禮儀』(장서각 K2-2101) 親臨救日食儀: 親臨救日食儀. 其日按庭署設殿下褥位於仁政殿階上近北南向. 設香案於其前, 又設小次於褥位之東.[隨地之宜.] [...] 左通禮詣閣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翼善冠·鑾袍·烏犀帶·白皮靴, 御內殿, 繖扇·侍衛如常儀. [...] 近侍[淺淡服]分入, 左右俯伏, 史官在其後. 將虧, 觀象監提調進當座前俯伏跪啓, 曰將虧食, 請警惕修省. 司香二人[淺淡服]焚香, 典樂三人[淺淡服]伐鼓. 食甚, 提調又進當座前啓請, 曰將食甚, 請益加警省. 將復, 又跪啓, 曰將復圓, 請匪懈厥省, 復圓, 鼓止. [...] [○今上壬戌, 以舊儀, 只以該監一小官奏達, 事體爲輕, 命本監提調舉行, 前期一日致齋, 定式, 御製三啓之辭, 寓警省.]

34 『銀臺條例』 禮攷 日月食: 救食處所殿階, 服色淺淡服.[食在地下, 不救.]

복식은 조선 전기에 국왕·시신(侍臣)·사향(司香)·전악(典樂)이 모두 소복을 입었으나, 조선 후기에 국왕은 익선관·참포·오서대·백괴화를 입었고 시신·사향·전악은 모두 천담복(淺淡服)을 입었다. 일식의 거행은 관상감 제조가 담당하였고 하루 전날에 재계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관상감 제조는 해와 달이 둑근 모양을 회복한 후에 재계하지 않았는데, 지평선 아래에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에는 단지 재계만 하고 구식하지 않았다.³⁵

영조는 일식에 대해 경계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세 번 아뢰는 말을 직접 지어 일식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관상감 제조가 아될 것을 명하였다. 관상감 제조는 국왕에게 ‘해가 장차 가려질 것이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수신하고 반성할 것을 청합니다.’와 ‘해가 장차 가장 많이 가려질 것이니 더욱 경계하고 반성할 것을 청합니다.’와 ‘해가 장차 다시 둉글어질 것이니 그 반성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청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렇게 일식의 상황에 따라 관상감 제조가 국왕에게 세 번 아뢰는 것은 고종 연간까지 시행되었다.³⁶

1785년(정조 9) 7월에 정조는 전교를 내려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규정을 논의하였고, 논의된 규정은 『대전통편』에 법제화하였다. 또한 월식을 구식 하는 의식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정조는 전교에서 『국조오례의』와 『국조속 오례의』에 수록된 의식에 따라 각 아문의 모든 관원이 구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근래에는 국왕이 친림하지 않으면 입직한 낭관(郎官)만 참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병조·관상감·군기시에서 문적을 상고하고 비변사와 논의를 거쳐 구식하는 규정을 수정하고 『대전통편』에 조항을 수록 할 것을 명하였다.³⁷

35 『銀臺便攷』 禮房攷 日月食: 日月食, 用齋, 復圓後, 勿用齋.[地下食, 只用齋無求食.]

36 『승정원일기』 2741책, 고종 6년(1869) 7월 1일(신미).

37 『승정원일기』 1586책, 정조 9년(1785) 7월 1일(무신).

『대전통편』에 수록된 구식 조항은 참석 인원, 중앙 아문에서 기물의 설치 여부, 국왕의 친립에 따른 구식의 거행 여부, 지방 아문의 구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식의 참석 인원은 각 아문의 당상관과 낭청 각 1원으로 정하고 해당 아문에 모여서 의식과 같이 구식을 거행하였다. 중앙 아문 가운데 의정부·육조·한성부·사헌부·사간원 등 대부분의 아문은 구식에 필요한 기물을 설치하였는데, 훈련원·통례원·교서관·내자시·예빈시·전의감·의영고·장원서·혜민서·전옥서·오부는 구식에 필요한 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궐내 각 아문은 국왕이 구식에 친립하지 않으면 구식을 거행하지 않았고 군영 아문이나 쇠잔한 아문도 구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지방 아문은 중앙 아문을 따라 거행하는데, 감영이 있는 고을은 감사가 구식에 함께 참석하였다. 병영과 수영에서는 구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나 수령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구식을 거행하였다.³⁸

1785년(정조 9) 마련된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1788년(정조 12) 편찬된 『춘관통고』에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지금 의식].

그날 전설사는 구식하는 자리를 인정전 계단 위에 북쪽 근처 남향으로 설치하고 香案을 그 앞에 설치한다. 악공이 징 5개를 인정전 계단 위에 남쪽 근처에 둔다. 병조는 깃발 5개를 징이 있는 곳 안에 진열하고 병기 5개를

38 『大典會通』 禮典 雜令: 《增》[...] 日月食時, 各司堂·郎各一員, [無堂上處, 行首官·佐貳官備二員.] 會本司, 救食如儀. [宗親府·議政府·忠勤府·儀賓府·敦寧府·中樞府·宣惠廳·義禁府·吏曹·戶曹·禮曹·兵曹·刑曹·工曹·漢城府·司憲府·司諫院·成均館·承文院·奉常寺·宗簿寺·司僕寺·軍器寺·內贍寺·司藥寺·軍資監·濟用監·繕工監·司宰監·掌樂院·觀象監·司譯院·廣興倉·長興庫·平市署·司圃署·典牲署·四學, 已上設器械, 訓練院·通禮院·校書館·內資寺·禮賓寺·典醫監·義盈庫·掌苑署·惠民署·典獄署·五部, 已上不設器械. ○闕內各司, 非親臨, 則否, 軍營衙門及殘司, 竝勿設行. ○外邑, 依京司設行, 試下邑, 監司同參, 兵·水營, 則否, 而兼本官處, 亦行.]

북이 있는 곳 밖에 진열한다.[다섯 색깔 깃발은 각각 방위를 따라 진열하며 矛는 동쪽에, 戟은 남쪽에, 鐵은 서쪽에, 劍은 북쪽에, 創은 중앙에 있다.]

달이 가려지기 1각 전에 승지와 사관은 모두 천담복을 입고 구식하는 자리에 나아가 달을 향해 끓어앉는다. 관상감 관원[천담복을 입는다.]이 나아가 끓어 앉고 달이 장차 가려질 것을 고하면 司香 2인[忠義衛]이고 천담복을 입는다.]이 향을 피우고 이를 마치면 악공 5인[천담복을 입는다.]이 징을 친다. 달이 가장 많이 가려질 때에 관상감 관원이 또 나아가 달이 장차 가장 많이 가려진 것을 고한다. 달이 장차 다시 둑글어질 때에 또 달이 장차 다시 둑글어질 것을 고하고 징을 그친다. 승지와 사관 및 관상감 관원이 물러나 나간다.

[그날에 백관들은 각각 본 아문에서 관아 앞에 징을 두고 모두 천담복을 입고서 징 뒤에 끓어앉으며 향을 피우고 징을 치는데, 달이 다시 둑글어지면 징을 그친다. 만약 지평선 아래에서 월식이 일어나면 구식하지 않는다. 외관이 월식을 구식하는 것은 동일하다.]³⁹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먼저 전설사가 구식하는 자리와 향안(香案)을 설치하고 악공이 징 5개를 마련하였다. 병조는 깃발 5개와 모(矛)·극(戟)·월(鐵)·검(劍)·창(創)의 병기 5개를 방위에 따라 진열하였다. 달이 가려지기 1각 전에 승지와 사관은 천담복을 입고 구식하는 자리에 나아갔다. 관상감 관원이 월식의 상황을 고하면, 천담복을 입은 사향(司香) 2인이 향을 피우고 악공 5인이 징을 치기 시작하였다가 달이 다시 둑글어지면 징을 멈추었

39 『春官通考』 卷76 軍禮 救月食儀: 救月食儀[今儀]. 其日典設司設救食位於仁政殿階上近北南向, 設香案於其前. 樂工置錚五於殿階上近南, 兵曹陳麾五於錚內, 兵五於錚外. [五色旗, 各從方位陳之, 矛在東, 戟在南, 鐵在西, 劍在北, 創在中.] 未虧前一刻, 承旨·史官俱以淺淡服就救食位, 向月跪坐. 觀象監官[淺淡服]進跪, 告月將虧食, 司香二人[忠義, 淺淡服.] 焚香訖, 樂工五人[淺淡服]伐金. 食甚, 觀象監官又進, 告月將食甚. 將復, 又告月將復圓, 金止. 承旨·史官及觀象監官退出.[其日百官各於本司, 置金於廳前, 皆以淺淡服, 跪坐於金後, 焚香伐金, 復圓而止. 若地下食則無救. 外官救食同.]

다.⁴⁰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에 참석하는 관원은 궐문을 닫기 전에 별도의 생기(省記)를 작성하여 들였다.⁴¹

구식하는 의식에 참석하지 않은 중앙 관원은 월식이 시작되기 전에 천담복을 입은 후에 판아 앞에 징을 두고 징 뒤에 끓어앉았다. 월식이 시작되면 향을 피우고 징을 쳐서 구식을 거행하고 달이 다시 둉글어지면 징을 멈추었다. 구식하는 의식에 국왕이 친립하지 않으면 예방승지가 참석하였는데, 해와 달이 처음 가려질 때, 가장 많이 가려진 때, 다시 둉글어진 때에 차례대로 국왕에게 가서 아뢰었다.⁴²

지방 아문에서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중앙 아문에서 구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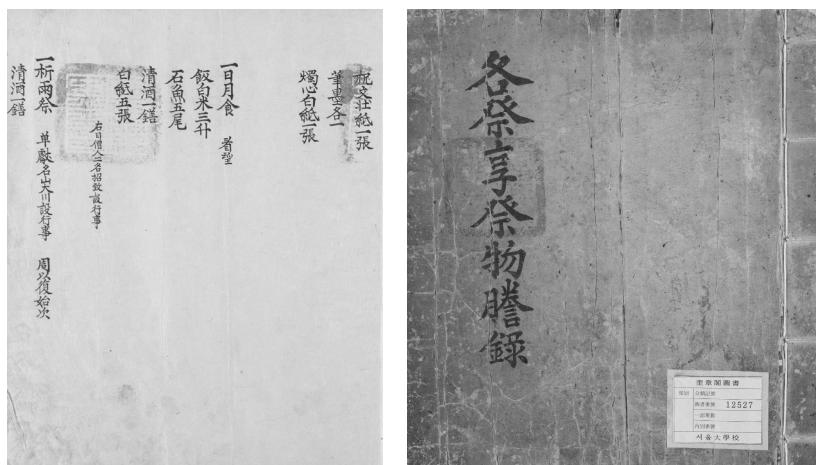


그림2-『各祭享祭物臘錄』(규장각 奎12527)

40 월식에 사용되는 징은 錚·鉦·鍾 등으로 추정되며, 錚을 치는 이유는 달이 陰에 속하기 때문에 쇠소리를 통해 陰의 기운을 돋기 위함이다. (송지원, 앞의 논문, 122~123쪽, 127쪽)

41 「大典通編」 兵典 啓省記：《續》[...] 月食時，救食所別省記。

『銀臺便攷』兵房攷 關門：月食時，救食人員，閉門前別省記入來，事畢後啓請標信，金虎門開門出送。

42 『銀臺條例』禮攷 日月食：該房承旨進參，而伐金救食，初虧·食甚·復圓，次第入稟。

의식과 비슷하게 거행하였다. 또한 지방 아문에서 일식과 월식의 구식에 사용된 제물과 인원은 조선 후기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에서 작성한 『각제 향제물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제향제물등록』에 따르면 동복현감은 일식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할 때에 제물로 반백미(飯白米) 3승, 석어(石魚) 5마리, 청주(淸酒) 1선, 백지(白紙) 5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식과 월식의 날짜에 승인(僧人) 2명을 불러서 구식하는 제향을 실행하였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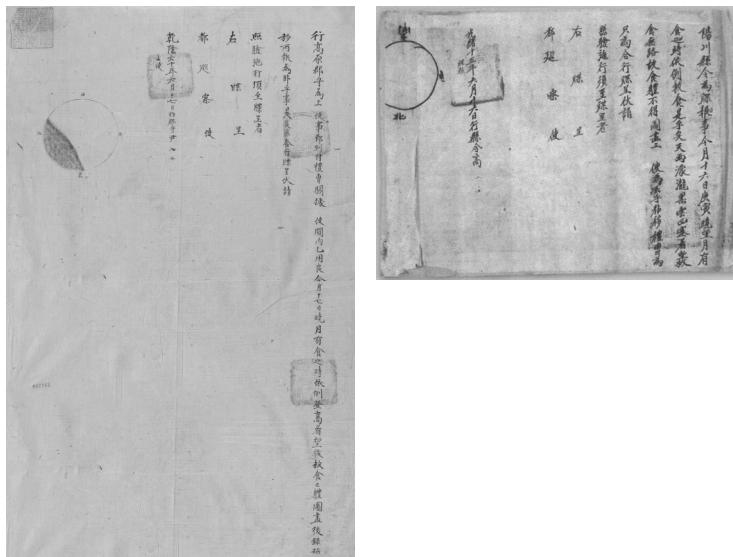
IV. 일식과 월식 이후 문서 행정

일식과 월식 이후에 문서 행정은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이 서로 달랐는데, 특히 지방 아문은 여러 단계의 문서 행정을 통해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였다. 중앙 아문에서는 국왕이 친림하지 않을 경우에 승정원 승지가 표지(標紙)와 단자(單子)로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였다. 월식의 구식에 참석한 예방승지는 국왕에게 초휴(初虧) 때에 징을 쳐서 구식하는 것을 들어가 아뢰고 초휴표지(初虧標紙)를 보고하였으며, 식심(食甚)과 복원(復圓) 때에 식체(食體)를 그린 단자를 입계(入啓)하여 보고하였다.⁴⁴

지방 아문에서는 지방 수령이 일식과 월식의 상황을 관찰사와 통제사에게 보고하였고, 관찰사와 통제사는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특히 지방 아문에서는 보고하는 관원에 따라 서로 다른 문서를 발급하여 일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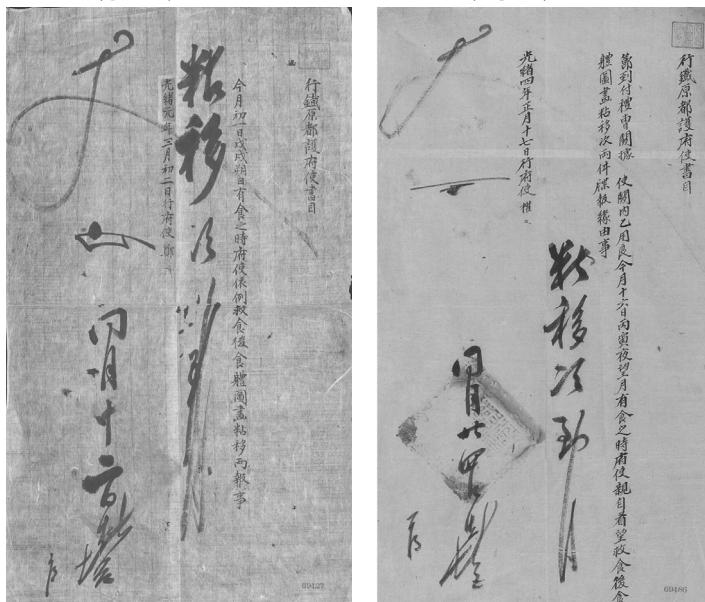
43 『各祭享祭物膳錄』(규장각奎12527): 一. 日月食 看望. 飯白米三升, 石魚五尾, 清酒一鑑, 白紙五張. 右日僧人二名招致設行事.

44 『銀臺便攷』禮房攷 日月食: 日月食時, 觀象監率其屬, 設救食儀於正殿階上, 陳錚鼓以俟. 初虧前刻, 禮房承旨, 以救食事, 入稟進去. 初虧時至, 以伐金救食入稟, 入初虧標紙, 食甚復圓, 圖畫食體, 修單子入啓而罷.



① 1795년(정조 19) 고원군수 尹相重 牒呈

② 1889년(고종 26) 양川縣令 高撫 牒呈



③ 1875년(고종 12) 鐵原府使 鄭雲參 書目

④ 1878년(고종 15) 鐵原府使 權應熾 書目

그림3-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첨정과 서목

월식을 보고하였다. 먼저 지방 수령이 관찰사에게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문서 행정은 첨정과 서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행 고원군수가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접수한 예조의 關에 근거한 관찰사 關의 내용에 따라 이번 달 17일 새벽에 월식이 있었을 때 규례에 따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펴본 후 구식하고 월식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 뒤에 수록하였으며 점련하여 문서를 보내기 위해 (첨정과 서목) 두 건으로 보고하는 일이므로 마땅히 첨정을 보내니 삼가 청컨대 조험하여 시행하고 모름지기 첨정을 이르게 합니다. 이 첨정을 도순찰사에게 보냅니다. 건륭 60년(1795, 정조 19) 6월 17일 행 군수 尹相重[착명][착암] 上使⁴⁵

② 양천현령이 첨정으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달 16일 경인 새벽 보름에 월식이 있을 때 규례에 따라 구식하려는데, 하늘에 비가 내리고 검은 구름이 사방으로 막혀서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월식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서 위에 보고하고 예조에 점련하여 문서를 보내기 위해 마땅히 첨정을 보내니 삼가 청컨대 조험하여 시행하고 모름지기 첨정을 이르게 합니다. 이 첨정을 도순찰사에게 보냅니다. 광서 15년(1889, 고종 26) 6월 16일 행 현령 高壠 [착명][착암] 牌報⁴⁶

③ 행 철원도호부사 서목.

이번 달 초1일 무술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을 때 부사는 전례에 따라 구식을

45 行高原郡守爲上使事. 節到付, 禮曹關據, 使關內乙用良, 今月十七日曉, 月有食之時, 依例登高, 看望後救食, 食體圖畫後錄, 粘移兩報爲臥乎事是良尗,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 都巡察使 乾隆六十年六月十七日 行郡守尹[着名][着押] 上使 [高原郡守之印] 3顆

46 陽川縣令爲牒報事. 今月十六日庚寅曉望, 月有食之時, 依例救食是乎矣, 天雨濛瀧, 黑雲四塞, 看望救食無路, 故食體不得圖畫, 上使爲去乎, 粘移禮曹爲只爲,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 都巡察使 光緒十五年六月十六日 行縣令高[着名][着押] 牌報 [陽川縣令之印] 1顆

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접련하여 문서를 보내기 위해 (첩정과 서목) 두 건으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광서 원년(1875, 고종 12) 3월 초2일 행 부사 鄭雲參[착명]

(題辭) 접련하여 문서를 보내기 위해 접수한다. 동월 12일 감영에서 도사 겸사[착압]⁴⁷

④ 행 철원도호부사 서목.

이번에 접수한 예조의 關에 근거한 관찰사 關의 내용에 따라 이번 달 16일 병인 밤 보름에 월식이 있었을 때에 부사가 직접 살펴보고 구식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접련하여 문서를 보내기 위해 (첩정과 서목) 두 건으로 연유를 첨보하는 내용입니다. 광서 4년(1878, 고종 15) 1월 17일 행 부사 權應燦[착명]

(題辭) 접련하여 문서를 보내기 위해 접수한다. 동월 24일 감영에서 도사 겸사[착압]⁴⁸

①은 1795년(정조 19) 고원군수 윤상중(尹相重)이 함경도관찰사 조종현(趙宗鉉)에게 월식을 보고하는 첨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상감이 예측한 월식 날짜를 예조는 국왕에게 보고한 후에 관찰사에게 관(關)을 보내 전달하였다. 6월 17일로 예측된 월식 날짜를 전달받은 함경도관찰사는 함경도의 지방 수령에게 관을 보내 월식 날짜를 전달하였다. 고원군수는 6월 17일 새벽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47 行鐵原都護府使書目. 今月初一日戊戌朔, 日有食之時, 府使依例救食後, 食體圖畫, 粘移兩報事. 光緒元年三月初二日 行府使鄭[着名] (題辭)粘移次到付. 同月十二日 在營 都事 兼使 [着押] [江原道觀察使之印] 1顆

48 行鐵原都護府使書目. 節到付, 禮曹關據, 使關內乙用良, 今月十六日丙寅夜望, 月有食之時, 府使親自看望, 救食後, 食體圖畫, 粘移次, 兩件牒報緣由事. 光緒四年正月十七日 行府使權 [着名] (題辭)粘移次到付. 同月廿四日 在營 都事 兼使[着押] [江原道觀察使之印] 1顆

후에 달의 동북쪽이 1/3 정도 잡식된 월식의 형상을 그린 첨정과 서목을 올려 함경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고원군수의 첨정에 기재된 ‘양보(兩報)’는 ‘양건첨보(兩件牒報)’의 줄임말로 첨정과 서목의 두 문서를 관찰사에게 보고한 것을 의미하였다.

②는 1889년(고종 26) 양천현령 고훈(高壎)이 경기관찰사 오준영(吳俊泳)에게 보고하는 첨정이다. 양천현령은 6월 16일 월식이 일어났을 때 비와 구름 때문에 월식을 살펴보지 못하여 월식의 형상을 그리지 못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첨정의 후록에는 동서남북과 빈 원형의 그림을 수록하여 지방 수령이 월식을 살펴보지 못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식과 월식을 살펴보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 수령은 관찰사에게 첨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③은 1875년(고종 12) 철원부사 정운삼(鄭雲參)이 강원도관찰사 윤병정(尹秉鼎)에게 일식을 보고하는 서목이고, ④는 1878년(고종 15) 철원부사 권응섭(權應燮)이 강원도관찰사 홍재현(洪在鉉)에게 월식을 보고하는 서목이다. 철원부사는 일식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일식과 월식의 형상을 그린 첨정과 보고의 내용을 요약한 서목으로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강원도관찰사는 서목의 여백에 ‘점련하여 문서를 보내기 위해 접수한다(粘移次到付)’는 내용의 제사(題辭)를 쓰고 착압하며 강원도관찰사지인(江原道觀察使之印)을 담인한 후에 철원부사에게 내려 주었다.

일식과 월식을 보고할 때에 지방 수령은 첨정과 서목을 함께 갖추어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지방 수령은 첨정에 일식과 월식의 상황과 대응한 내용을 기재하고 일식과 월식의 형상을 그려 보고하였고, 서목에 보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지방 수령의 첨정과 서목을 접수한 후 서목의 여백에 제사를 써서 다시 지방 수령에게 내려주었다.

지방 아문 중에서 제주 지역의 수령은 육지의 수령과는 다르게 관찰사에게 직접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판관(濟州判官)과 대정(大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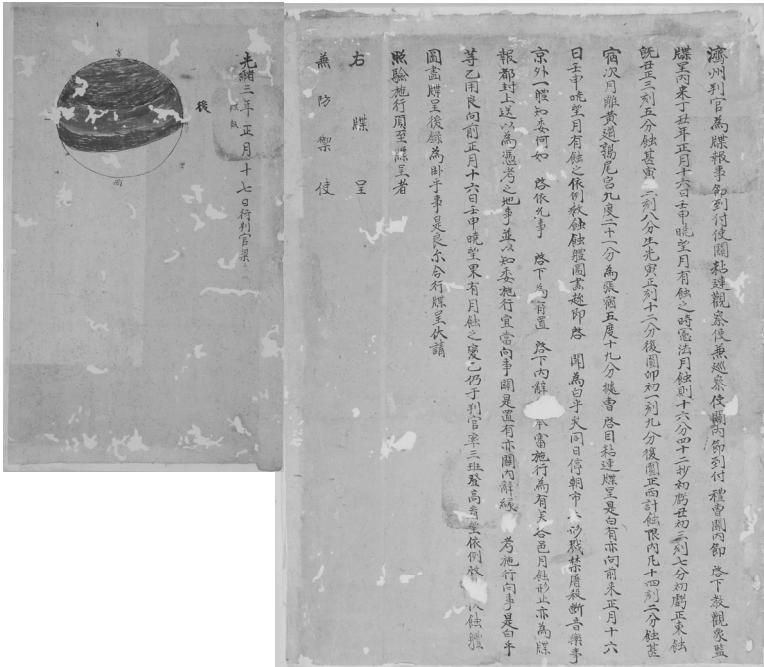


그림4- 1877년(고종 14) 濟州判官 梁濟夏 牒문

정의(旌義)의 수령은 제주목사에게 첨정을 올려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면 제주목사가 전라도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서 행정은 1877년(고종 14) 제주판관 양제하(梁濟夏)가 제주목사·겸방어사 백낙연(白樂淵)에게 보고하는 첨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판관의 첨정은 먼저 이전에 전달받은 제주목사의 관(關)을 인용하였다. 제주목사의 관은 관상감 첨정, 예조 계목, 예조 관, 전라도관찰사 관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이어서 제주판관이 1월 16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 월식의 형상을 후록한다는 내용이었다. 첨정의 후록에는 달이 2/3 정도 잡식된 월식의 형상을 수록하였다.⁴⁹ 제주판관의 첨정을

⁴⁹ 濟州判官爲牒報事. 節到付, 使關粘連, 觀察使兼巡察使關內, 節到付, 禮曹關內, 節啓下教,

접수한 제주목사는 전라도관찰사에게 첨정을 올려 월식을 보고하였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일식과 월식을 보고할 때에 1차로 지방 수령이 제주목사에게 보고하고 2차로 제주목사가 전라도관찰사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표1-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牒呈과 書目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규격	출처
1	1795년(정조 19) 6월 17일	고원군수 尹相重	함경도관찰사 趙宗鉉	6월 17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시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첨정	75×47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2 -官府文書-, 1987, 579~580쪽
2	1873년(고종 10) 9월 16일	철원부사 鄭雲參	강원도관찰사 尹秉鼎	9월 16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시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서목 題辭: 점련하여 移文하기 위해 到付함	56×32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559~560쪽
3	1873년(고종 10) 12월 4일	철원부사 鄭雲參	강원도관찰사 尹秉鼎	내년 3월 17일 새벽에 월식과 願納·結歛의 협파에 대한 關을 11월 28일 戊時에 到付한 것을 보고하는 서목 題辭: 到付함	56×32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571쪽

觀象監牒呈內, 來丁丑年正月十六日壬申曉望, 月有蝕之, 時憲法月蝕, 則十六分四十二抄. 初虧丑初三刻七分, 初虧正東, 蝕既丑正三刻五分, 蝕甚寅□[初]二刻八分, 生光寅正刻十二分. 復圓卯初一刻九分, 復圓正西, 計蝕限內, 凡十四刻二分. 蝏甚宿次, 月離黃道鶉尾宮九度二十一分, 爲張宿五度十九分據, 曹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 向前來正月十六日壬申曉望, 月有蝕之, 依例救蝕, 蝏體圖畫, 趁卽啓聞爲白乎矣. 同日停朝市, □[去]形刑戮, 禁屠殺, 斷音樂事, 京外一體知委, 何如.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爲有矣, 各邑月蝕形止, 亦爲牒報, 都封上送, 以爲憑考之地事, 竝以知委施行, 宜當向事. 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施行向事是白乎等乙用良, 向前正月十六日壬申曉望, 果有月蝕之變乙仍于, 判官率三班, 登高看望, 依例救□[蝕後], 蝏體圖畫, 碑呈後錄爲臥乎事是良尷,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牒呈 兼防禦使 光緒三年正月十七日 行判官梁[着名][着押] 碑報 後

50 일식·월식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수령의 解由도 대정·정의 수령이 제주목사에게 1차로 보고하고, 제주목사가 전라도관찰사에게 2차로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2015), 23~25쪽)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규격	출처
4	1874년(고종 11) 3월 17일	철원부사 鄭雲參	강원도관찰사 尹秉鼎	3월 17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서목 題辭: 점련하여 移文하기 위해 到付함	55×31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584쪽
5	1874년(고종 11) 6월 4일	철원부사 鄭雲參	강원도관찰사 尹秉鼎	가을 제사에 배정된 날짜를 알리는 關과 9월 16일 월식에 대한 關을 5월 30일 午時에 到付한 것을 보고하는 서목 題辭: 到付함	56×31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587쪽
6	1874년(고종 11) 9월 16일	철원부사 鄭雲參	강원도관찰사 尹秉鼎	9월 16일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한 후에 보고하는 서목 題辭: 점련하여 移文하기 위해 到付함	54×30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597~598쪽.
7	1874년(고종 11) 12월 4일	철원부사 鄭雲參	강원도관찰사 尹秉鼎	내년 3월 1일 일식을 알리는 내용과 輔養廳筆債定式의 내용을 수록한 關을 11월 30일酉時에 到付한 것을 보고하는 서목 題辭: 到付함	53×30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611~612쪽
8	1875년(고종 12) 3월 2일	철원부사 鄭雲參	강원도관찰사 尹秉鼎	3월 1일 일식에 구식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서목 題辭: 점련하여 移文하기 위해 到付함	53×30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620쪽
9	1877년(고종 14) 1월 17일	제주판관 梁濟夏	제주목사 白樂淵	1월 16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첨정	59× 66.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所藏 3791, 3794
10	1877년(고종 14) 1월 17일	대정군수 李友植	제주목사 白樂淵	1월 16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첨정	52.4× 40.3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所藏 3778
11	1878년(고종 15) 1월 17일	철원부사 權應熒	강원도관찰사 洪在鉉	1월 16일 밤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서목 題辭: 점련하여 移文하기 위해 到付함	50×29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5 -官府文書-, 1988, 654쪽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규격	출처
12	1889년(고종 26) 6월 16일	안산군수 姜鍵	경기관찰사 吳俊泳	6월 16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하였는데 구름 때문에 어두워서 월식의 형상을 그리지 못한 연유를 보고하는 첨정	33× 44.2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2004, 124쪽
13	1889년(고종 26) 6월 16일	양천현령 高壠	경기관찰사 吳俊泳	6월 16일 새벽에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하였는데 비가 내리고 어두운 구름 때문에 월식의 형상을 그리지 못한 연유를 보고하는 첨정	33× 44.8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2004, 125쪽

지방 수령의 보고를 받은 관찰사·통제사·유수는 국왕에게 계본(啓本)을 올려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였다. 대리청정기에는 계본 대신에 왕세자에게 신본(申本)을 올려 보고하였다. 계본은 중앙과 지방의 2품 이상 관원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입계문서(入啓文書)로 해당 관원은 주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내용을 계본으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직계(直啓)하였다.⁵¹ 신본은 왕세자의 대리청정기간에 계본 대신에 왕세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⁵² 관찰사·통제사·유수가 국왕 또는 왕세자에게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계본과 신본은 실물로 현전하는 문서가 없지만 각 도의 감영계록·감영등록·통제영계록 등에 등록되어 있다. 관찰사·통제사가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계본과 신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經國大典』「禮典」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亦得直啓, 各司有繁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直行移, 〔相考事外皆啓〕其餘衙門, 並報屬曹.

노인환, 「조선 후기 水原府留守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9(2018), 249쪽.

52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 代理聽政期 文書 研究」, 『古文書研究』 36(2010), 31~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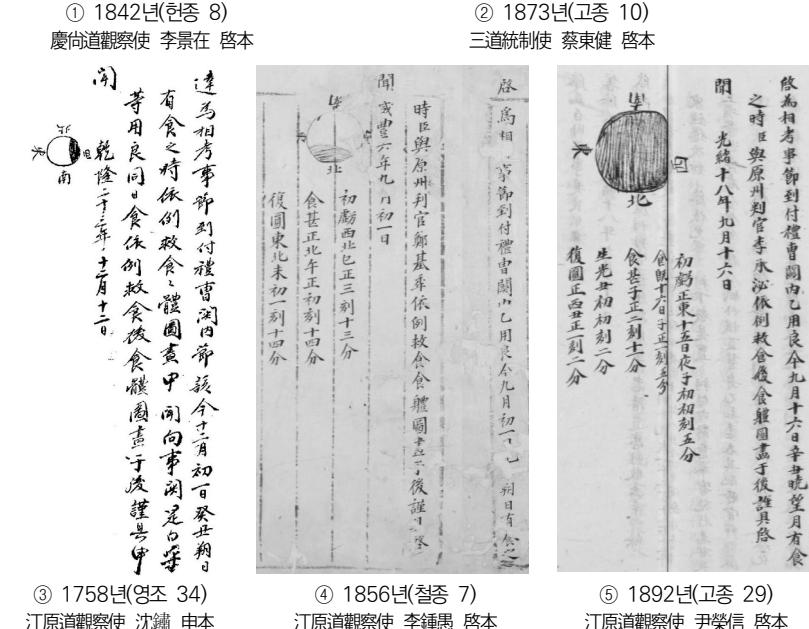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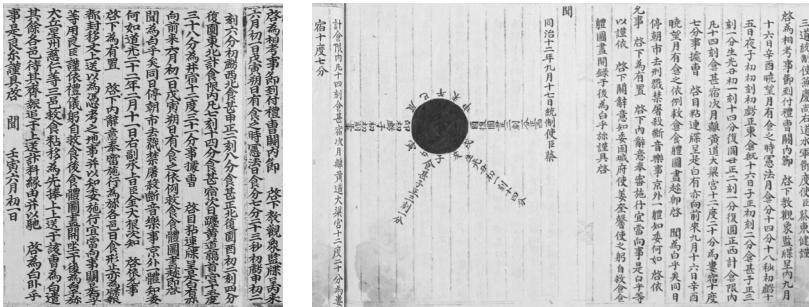


그림5-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啓本과 申本

① 상고할 내용을 아립니다. 이번에 도착하여 접수한 예조의 關에 “이번에 啓下하신 관상감의 첨정에 ‘오는 6월 초1일 무인 초하루에 일식이 있을 것이니 … 井宿 12도 31분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첨정의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획에 ‘첨정을 접련하였습니다.’ 지난번 오는 6월 초1일 무인 초하루에 일식이 있을 것이니 전례에 따라 구식하고 일식의 형상은 그림을 그려 빨리 啓聞하는

데, 같은 날에 조정과 시장을 정지하고 형벌로 죽이는 것을 없애며 도살을 금지하고 음악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京外에 일체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광 22년(1842, 현종 8) 2월 11일 우부승지 신 金大根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계하하였습니다. 계하한 내용을 받들어 살펴서 시행하며, 각 읍에서는 일식의 상황을 또한 첨정으로 보고하고 모두 봉하여 문서를 올려 보내서 비추어 살피는 바탕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울러 잘 알려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는 關이었습니다. 신이 삼가 禮儀에 따라 직접 구식한 후 일식의 형상은 그림을 그려 뒤에 開坐하였으며, 大丘·星州·慈仁 등 3읍에서 구식하고 점련하여 문서를 보냈으니 우선 받아서 해당 아문에 올려 보내고 그 나머지 각 읍은 일제히 보고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후에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馳啓하였으니 삼가 갖추어 啓聞합니다. 임인 6월 초1일.⁵³

② 삼도통제사·겸경상우도수군절도사 신 蔡東健이 상고할 내용을 아립니다. 이번에 도착하여 접수한 예조의 關에 "이번에 계하하신 관상감의 첨정에 '9월 16일 신유 새벽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이니 [...] 10도 7분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첨정의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첨정을 점련하였습니다. [...] 京外에 일체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계하

53 『慶尙監營啓錄』 1842년(현종 8) 6월 1일: 啓爲相考事. 節到付, 禮曹關內, 節啓下敎, 觀象監牒呈內, 來六月初一日戊寅朔, 日有食之, 時憲法日食分, 七分二十三抄. 初虧申初二刻六分, 初虧西北, 食甚申正二刻八分, 食甚正北, 復圓酉初二刻四分, 復圓東北. 計食限內, 凡七刻十四分, 食甚宿次, 日躔黃道鶉首宮十五度三十八分, 為井宿十二度三十一分事據, 曹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 向前來六月初一日戊寅朔, 日有食之, 依例救食, 食體圖畫, 趁卽啓聞爲白乎矣, 同日停朝市, 去戮, 禁屠殺, 斷音樂事, 京外一體知委, 何如. 道光二十二年二月十一日, 右副承旨臣金大根次知,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爲旂, 各邑日食形止, 亦爲牒報, 都封移文上送, 以爲憑考之地事, 幷以知委施行, 宜當向事. 關是白乎等用良, 臣謹依禮儀, 躬自救食後, 食體圖畫, 開坐于後爲白乎旂, 大丘·星州·慈仁等三邑, 救食粘移, 爲先捧上, 上送于該曹爲白遣, 其餘各邑, 待其齊報, 追于上送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尙, 謹具啓聞. 壬寅六月初一日.

하였습니다. 계하한 내용을 받아서 살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계하로 인하여 보낸 關의 내용에 따라 고성부사 姜奎馨에게 알려서 직접 스스로 구식하게 하고 달의 형상은 그림을 그려 뒤에 開錄하였으니 삼가 갖추어 啓聞합니다. 동치 12년(1873, 고종 10) 9월 17일 통제사 신 채동건. 初虧는 子初 初刻 正東. 食甚은 子正 3각 1분. 生光은 丑初 1각 14분. 復圓은 丑正 2각 1분 正西. 월식의 시간을 계산하면 총 14각이고, 食甚의 宿次는 달이 黃道의 大梁宮 12도 20분에 위치하는데, 婁宿 10도 7분.⁵⁴

③ 상고할 내용을 아립니다. 이번에 도착하여 접수한 예조 關의 내용에, 간략히 요약하면 이번 12월 초1일 계축 초하루에 일식이 있을 때 전례에 따라 구식하고 일식의 형상을 그려 아뢰는 내용이라는 關이므로 앞의 일식을 전례에 따라 구식한 후에 일식의 형상은 뒤에 그림을 그려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건륭 23년(1758, 영조 34) 12월 12일.⁵⁵

④ 상고할 내용을 아립니다. 이번에 도착하여 접수한 예조 關의 내용에 이번 9월 초1일 을묘 초하루에 일식이 있을 때 신이 원주판관 鄭基年과 전례에 따라 구식하고 일식의 형상을 뒤에 그림을 그려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함풍 6년(1856, 철종 7) 9월 초1일. 初虧는 西北 巳正 3각 13분. 食甚은 正北 午正 初刻 14분. 復圓은 東北 未初 1각 14분.⁵⁶

54 『統制營啓錄』 1873년(고종 10) 9월 17일: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臣蔡東健, 謹啓爲相考事. 節到付, 禮曹關內, 節啓下教, 觀象監牒呈內, 九月十六日辛酉曉望, 月有食之, [...] 十度七分事據, 曹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 [...] 京外一體知委, 何如. 啓依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 宜當向事是白乎等以, 謹依啓下關辭意, 知委固城府使姜奎馨, 使之躬自救食, 食體圖畫, 開錄于後爲白乎旤, 謹具啓聞. 同治十二年九月十七日統制使臣蔡. 初虧子初初刻正東. 食甚子正三刻一分. 生光丑初一刻十四分. 復圓丑正二刻一分正西. 計食限內, 凡十四刻. 食甚宿次, 月離黃道大梁宮十二度二十分, 為婁宿十度七分.

55 『東營狀啓謄錄』 1758년(영조 34) 12월 12일: 達爲相考事. 節到付, 禮曹關內, 節該, 今十二月初一日癸丑朔, 日有食之時, 依例救食, 食體圖畫, 申聞向事, 關是白乎等用良, 同日食, 依例救食後, 食體圖畫于後, 謹具申聞. 乾隆二十三年十二月十二日.

⑤ 상고할 내용을 아립니다. 이번에 도착하여 접수한 예조 關의 내용에 이번 9월 16일 신축 새벽 보름에 월식이 있을 때 신이 원주판관 李承泌과 전례에 따라 구식한 후에 월식의 형상은 뒤에 그림을 그려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광서 18년(1892, 고종 29) 9월 16일. 初虧는 正東 15일 밤 子初 初刻 5분. 食既은 16일 子正 1각 5분. 食甚은 子正 2각 11분. 生光은 丑初 初刻 2분. 復圓은 正西 丑正 1각 2분.⁵⁷

①은 1842년(현종 8) 경상도관찰사 이경재(李景在)가 현종에게 일식을 보고하는 계본이고, ②는 1873년(고종 10) 삼도통제사·겸경상우도수군절도사 채동건(蔡東健)이 고종에게 월식을 보고하는 계본이다. ③은 1758년(영조 34) 강원도관찰사 심수(沈鏞)가 사도세자에게 일식을 보고하는 신본이고, ④는 1856년(철종 7) 강원도관찰사 이종우(李鍾愚)가 철종에게 일식을 보고하는 계본이며, ⑤는 1892년(고종 29) 강원도관찰사 윤영신(尹榮信)이 고종에게 월식을 보고하는 계본이다. 계본과 신본의 후록에는 일식과 월식의 형상인 식체(食體)를 그려 보고하였는데, 통제사 계본은 『통제영계록』에 식체를 그렸으나 경상도관찰사 계본은 『경상감영계록』에 식체를 생략하였다. ③~⑤의 계본과 신본은 등록할 때에 인용된 문서를 생략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식체를 수록하였다.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계본은 일식과 월식 이전에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 사이에서 왕래하였던 문서와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인용하였다.

56 『江原監營啓錄』 1856년(철종 7) 9월 1일: 啓爲相考事. 節到付, 禮曹關內乙用良, 今九月初一日乙卯朔, 日有食之時, 臣與原州判官鄭基年, 依例救食, 食體圖畫于後. 謹具啓聞. 咸豐六年九月初一日. 初虧西北巳正三刻十三分. 食既正午正初刻十四分. 復圓東北未初一刻十四分.

57 『關東啓錄』 1892년(고종 29) 9월 16일: 啓爲相考事. 節到付, 禮曹關內乙用良, 今九月十六日辛丑曉望, 月有食之時, 臣與原州判官李承泌, 依例救食後, 食體圖畫于後. 謹具啓聞. 光緒十八年九月十六日. 初虧正東十五日夜子初刻五分. 食既十六日子正一刻五分. 食甚子正二刻十一分. 生光丑初初刻二分. 復圓正酉丑正一刻二分.

계본에는 먼저 예조에서 관찰사와 통제사에게 보낸 관을 인용하였다. 예조의 관은 관상감이 예조에 보고하는 첨정, 예조에서 관상감 첨정을 점련하여 국왕에게 입계한 계목, 국왕이 결재한 계하(啓下)를 수록하고 계하를 받들어 시행하라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예조의 관 다음에는 관찰사와 통제사가 일식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내용, 날씨 때문에 일식과 월식을 살펴보지 못한 내용, 소속된 지방 수령이 일식과 월식을 살펴본 내용, 일식과 월식의 형상을 그려서 보고한 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관찰사와 통제사가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계본을 국왕에게 입계하면, 국왕은 계자인(啓字印)을 찍고 결재한 내용인 판부(判付)를 내려주었다. 판부의 내용은 일식과 월식의 계본을 예조에 내리라(啓下禮曹)는 것이었다. 이는 일식과 월식의 그림을 그리고 올려 보낸 사안에 대해 예조에 계하한다는 『판부규식』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⁵⁸ 계본에 대해 국왕의 판부가 내려지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후에 지방 아문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이 완료되었다.

표2-일식과 월식을 보고하는 啓本과 申本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출처
1	1758년(영조 34) 12월 12일	강원도관찰사 沈鏞	사도 세자	12월 1일 일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신본(食體 도면 있음)	『東營狀啓謄錄』 (장서각 K2 - 3309)
2	1758년(영조 34) 12월 28일	강원도관찰사 沈鏞	사도 세자	12월 15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신본	『東營狀啓謄錄』 (장서각 K2 - 3309)
3	1809년(순조 9) 9월 16일	광주부유수 韓用鐸	순조	9월 15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禮房謄錄』 (규장각奎21462)
4	1822년(순조 22) 12월 16일	평안도관찰사 金履喬	순조	12월 16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關西啓錄』 (장서각 K2-3632)

58 『判付規式』 禮房: 一. 日月食圖畫上送事, 啓下禮曹.

『判付規式』은 조선시대 국왕에게 입계하는 문서들에 대한 판부 방식을 기록한 자료이다. (김병구, 「조선 후기 漕運船 致敗의 보고와 처리: 1867년 公忠道水軍節度使 李志鼎 啓本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8(2021), 8쪽)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출처
5	1833년(순조 33) 11월 17일	전라도관찰사 徐有榘	순조	11월 17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完營日錄』
6	1842년(현종 8) 6월 1일	경상도관찰사 李景在	현종	6월 1일 일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慶尙監營啓錄』 (규장각奎15100)
7	1842년(현종 8) 6월 16일	경상도관찰사 李景在	현종	6월 15일 월식을 구름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慶尙監營啓錄』 (규장각奎15100)
8	1852년(철종 3) 11월 2일	충청도관찰사 李根友	철종	11월 1일 일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忠淸監營啓錄』 (규장각奎15092)
9	1852년(철종 3) 11월 17일	충청도관찰사 李根友	철종	11월 16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忠淸監營啓錄』 (규장각奎15092)
10	1854년(철종 5) 4월 17일	충청도관찰사 沈宜冕	철종	4월 16일 월식을 구름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忠淸監營啓錄』 (규장각奎15092)
11	1854년(철종 5) 5월 9일	충청도관찰사 沈宜冕	철종	5월 1일 일식을 살펴보다가 구름과 인개 때문에 모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忠淸監營啓錄』 (규장각奎15092)
12	1856년(철종 7) 4월 7일	함경도관찰사 李是遠	철종	3월 16일 월식에 도내 각 읍의看望 여부와 구름과 인개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咸鏡監營啓錄』 (장서각K2-3674)
13	1856년(철종 7) 9월 1일	강원도관찰사 李鍾愚	철종	9월 1일 일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江原監營啓錄』 (규장각奎15106)
14	1856년(철종 7) 9월 16일	강원도관찰사 李鍾愚	철종	9월 16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하였는데, 달이 진 후에 월식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월식의 형상을 그리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江原監營啓錄』 (규장각奎15106)
15	1862년(철종 13) 11월 22일	함경도관찰사 李鍾愚	철종	10월 15일 월식에 도내 각 읍의看望 여부와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咸鏡監營啓錄』 (장서각K2-3674)
16	1863년(철종 14) 10월 17일	경상도관찰사 徐憲淳	철종	10월 15일 월식을 구름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慶尙監營啓錄』 (규장각奎15100)
17	1863년(철종 14) 11월	함경도관찰사 李裕元	철종	10월 15일 월식에 도내 각 읍의看望 여부와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咸鏡監營啓錄』 (장서각K2-3674)
18	1866년(고종 3) 8월 23일	황해도관찰사 朴承輝	고종	8월 16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黃海監營狀啓臘錄』 (장서각K2-3676)
19	1867년(고종 4) 2월 23일	황해도관찰사 朴承輝	고종	2월 15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黃海監營狀啓臘錄』 (장서각K2-3676)
20	1871년(고종 8) 5월 16일	충청도관찰사 金炳始	고종	5월 15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忠淸監營啓錄』 (규장각奎15092)
21	1871년(고종 8) 5월 16일	삼도통제사 鄭圭應	고종	5월 15일 월식을 고성부사에게 통지하고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統制營啓錄』 (규장각奎15101)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출처
22	1872년(고종 9) 5월 3일	경상도관찰사 金世鎬	고종	5월 1일 일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慶尙監營啓錄』 (규장각奎15100)
23	1873년(고종 10) 4월 18일	삼도통제사 蔡東健	고종	4월 16일 월식을 고성부사에게 통지하였는데 구름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統制營啓錄』 (규장각奎15101)
24	1873년(고종 10) 9월 17일	삼도통제사 蔡東健	고종	9월 16일 월식을 고성부사에게 통지하고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統制營啓錄』 (규장각奎15101)
25	1874년(고종 11) 9월 17일	강화부유수 趙秉式	고종	9월 16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江華留營啓錄』 (장서각K2-3623)
26	1875년(고종 12) 3월 2일	강화부유수 趙秉式	고종	3월 1일 일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일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江華留營啓錄』 (장서각K2-3623)
27	1878년(고종 15) 7월	함경도관찰사 金世均	고종	7월 1일 일식에 도내 각 읍의 看望 여부와 공무를 시행하지 않아서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咸鏡監營啓錄』 (장서각K2-3674)
28	1879년(고종 16) 11월 17일	전라도관찰사 沈履澤	고종	11월 17일 월식을 비와 구름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湖南啓錄』 (장서각K2-3675)
29	1879년(고종 16) 11월 19일	강화부유수 金永壽	고종	11월 17일 월식에 구식을 거행하였으나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江華留營啓錄』 (장서각K2-3623)
30	1879년(고종 16) 12월 16일	함경도관찰사 金炳地	고종	11월 17일 월식에 도내 각 읍의 看望 여부와 구식을 거행하였으나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咸鏡監營啓錄』 (장서각K2-3674)
31	1880년(고종 17) 5월 16일	전라도관찰사 沈履澤	고종	5월 15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湖南啓錄』 (장서각K2-3675)
32	1881년(고종 18) 11월 8일	함경도관찰사 金有淵	고종	10월 15일 월식에 도내 각 읍의 看望 여부와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	『咸鏡監營啓錄』 (장서각K2-3674)
33	1882년(고종 19) 5월 8일	함경도관찰사 金有淵	고종	4월 1일 일식에 대해 도내 각 읍의 看望 여부와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咸鏡監營啓錄』 (장서각K2-3674)
34	1887년(고종 24) 1월 17일	전라도관찰사 尹榮信	고종	1월 16일 월식을 구름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	『湖南啓錄』 (장서각K2-3675)
35	1887년(고종 24) 12월 30일	황해도관찰사 趙秉轍	고종	12월 17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黃海監營狀啓體錄』 (장서각K2-3676)
36	1889년(고종 26) 6월 20일	황해도관찰사 趙秉轍	고종	6월 16일 월식에 구식을 거행하였으나 구름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黃海監營狀啓體錄』 (장서각K2-3676)
37	1892년(고종 29) 9월 16일	강원도관찰사 尹榮信	고종	9월 16일 월식을 살펴보고 구식을 거행한 후에 월식의 형상을 보고하는 계본(食體 도면 있음)	『關東啓錄』 (규장각 古4255.5-11)

V. 맷음말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에 대한 업무는 조선 초기에 서운관에서 담당하였고, 세조 이후에 관상감에서 담당하였다.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한 후 3개월 전에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국왕에게 입계하였다. 1769년(영조 45) 영조는 일식과 월식의 5개월 전에 일식단자와 월식단자를 입계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기 전후에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 행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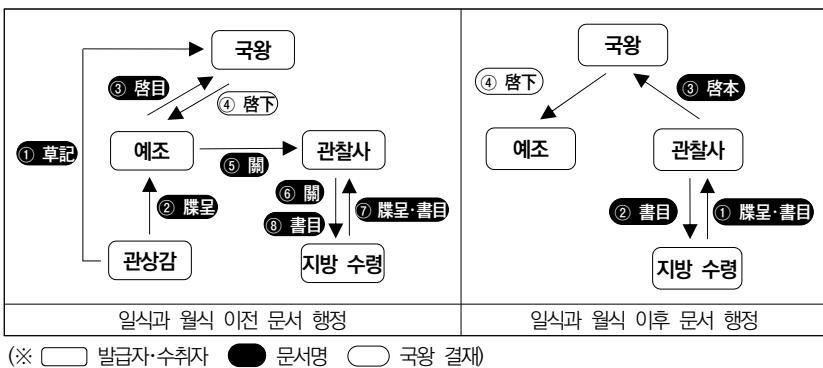


그림6-조선시대 일식과 월식 전후 문서 행정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한 날짜를 3개월 또는 5개월 전에 초기를 올려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7일 전에 다시 초기를 올려 보고하였다. 또한 관상감은 예조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첨정을 올려 예조에 보고하였고, 예조는 관상감의 첨정을 점련한 계목을 올려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국왕은 예조의 계목을 계하하였고, 예조는 계목의 내용을 관찰사에게 관으로 전달

하였다. 관찰사가 지방 수령에게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관으로 전달하면 일식과 월식 이전에 문서 행정이 마무리되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에서는 일식과 월식을 살펴본 후에 구식을 거행하였다. 조선 전기에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세종 연간에 마련하였고, 1474년(성종 5) 편찬된 『국조오례의』 구일식의에서 정리되었다. 이후 1744년(영조 20) 편찬된 『국조속오례의』 친립구일식의에서 구식 장소, 복식, 담당 관원, 국왕에게 아뢰는 내용 등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1785년(정조 9) 정조는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규정을 논의한 후에 『대전통편』에 반영하였고,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일식과 월식 이후에 문서 행정은 구식을 거행한 지방 수령이 관찰사에게 첨정과 서목을 올려 일식과 월식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지방 수령의 보고를 받은 관찰사와 통제사는 국왕에게 계본을 올려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였다. 관찰사와 통제사의 계본을 받은 국왕이 최종적으로 예조에 계하하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후에 문서 행정이 완료되었다.

본고는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통해 일식과 월식을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식과 월식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중앙 아문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 중앙 아문에서 지방 아문으로 전달하는 문서 행정, 지방 아문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을 규명하였다. 다만 일식과 월식에 대한 조선시대 인식의 변화, 시대적으로 일식과 월식을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다루지 못한 점은 추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연구한 일식과 월식의 문서 행정을 통해 고문서학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조선시대 각종 제도를 규명하고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各祭享祭物膳錄』(규장각奎12527,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index.jsp>).
- 『江原監營啓錄』(규장각奎15106).
- 『江華留營啓錄』(장서각 K2-3623,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
- 『經國大典』·『經國大典註解』·『大典會通』·『六典條例』·『銀臺條例』·『銀臺便攷』(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law/>).
- 『慶尙監營啓錄』(규장각奎15100).
- 『高麗史』(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KOREA>).
- 『關東啓錄』(규장각古4255.5 - 11).
- 『關西啓錄』(장서각 K2-3632).
- 『國朝續五禮儀』(장서각 K2-2101).
- 『國朝五禮儀』(장서각 K2-2113).
- 『東營狀啓膳錄』(장서각 K2 - 3309)
-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 『禮房膳錄』(규장각奎21462).
-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 『春官通考』(규장각奎12272).
- 『忠清監營啓錄』(규장각奎15092).
- 『統制營啓錄』(규장각奎15101).
- 『判付規式』(규장각 가람古349.102-P192).
- 『咸鏡監營啓錄』(장서각 K2-3674).
- 『黃海監營狀啓膳錄』(장서각 K2-3676).
- 『湖南啓錄』(장서각 K2-3675).

2. 단행본

-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서울: 통천문화사, 2004.
-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2(官府文書). 서울: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7.
- _____, 『古文書』 5(官府文書). 서울: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完營日錄』 一~三. 서울: 대동문화연구원, 2002.
이면우·허윤섭·박권수(역주), 『서운관지』. 서울: 소명출판, 2003.

3. 논문

- 경석현, 「조선후기 當食不食 논의와 그 의미」. 『동방학지』 189, 2019, 173~205쪽.
- 구만옥, 「朝鮮後期 日月蝕論의 變化」. 『韓國思想史學』 19, 2002, 185~228쪽.
- 김병구, 「조선 후기 潛運船 致敗의 보고와 처리: 1867년 公忠道水軍節度使 李志鼎 啓本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8, 2021, 1~28쪽.
- 김슬기, 「18세기 중반 조선 일월식 계산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청나라 일월식 자문」. 『한국과학사학회지』 42, 2020, 65~95쪽.
-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2015, 10~37쪽.
- _____, 「조선 후기 水原府留守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9, 2018, 236~271쪽.
- 송지원, 「조선시대 일식 월식을 구(救)하는 의례」. 『문헌과 해석』 40, 2007, 120~134쪽.
- 이국진, 「일식과 월식을 소재로 한 한국 한시의 양상과 의미」. 『고전과 해석』 20, 2016, 63~108쪽.
-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 代理聽政期 文書 研究」. 『古文書研究』 36, 2010, 55~96쪽.

국문초록

일식과 월식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해와 달의 위치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에 대한 업무는 조선 초기에 서운관(書雲觀)에서 담당하였고, 세조 이후에 관상감(觀象監)에서 담당하였다.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한 후 3개월 전에 초기(草記)를 국왕에게 입계(入啓)하였다. 1769년(영조 45) 영조는 5개월 전에 초기를 입계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예조에 소속된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한 후에 첨정을 올려 예조에 보고하였고, 예조는 관상감의 첨정을 점련(粘連)한 계목(啓目)을 올려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국왕의 결재를 받은 예조는 계목의 내용을 관찰사·통제사·유수에게 관(關)으로 전달하였고, 관찰사는 지방 수령에게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전달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에서는 일식과 월식을 살펴본 후에 구식을 거행하였다. 조선 전기에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세종 연간에 마련하였고, 1474년(성종 5) 편찬된 『국조오례의』 구일식의(救日食儀)에서 정리되었다. 이후 1744년(영조 20) 편찬된 『국조속오례의』 친림구일식의에서 구식 장소, 복식, 담당 관원, 국왕에게 아뢰는 내용 등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1785년(정조 9) 정조는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규정을 논의한 후에 『대전통편』에 반영하였고,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일식과 월식 이후에 문서 행정은 구식을 거행한 지방 수령이 관찰사에게 첨정과 서목을 올려 일식과 월식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지방 수령의 보고를 받은 관찰사와 통제사는 국왕에게 계본(啓本)을 올려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였다. 관찰사와 통제사의 계본을 받은 국왕이 최종적으로 예조에 계하하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후에 문서 행정이 완료되었다.

본고는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통해 일식과 월식을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식과 월식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중앙

아문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 중앙 아문에서 지방 아문으로 전달하는 문서 행정, 지방 아문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을 규명하였다.

투고일 2022. 6. 19.

심사일 2022. 7. 29.

제재 확정일 2022. 8. 12.

주제어(keyword) 일식(Solar Eclipses), 월식(Lunar Eclipses), 관상감(Gwansanggam), 救食(Gushik), 문서 행정(Document Administration)

Abstract

Dealing with Solar and Lunar Eclipses and Document Administration in the Joseon Dynasty

Noh, In-hwan

Solar and lunar eclipses are natural phenomena that are occurred by the changes of the positions of sun and moon from the earth. Seowoongwan was responsible for the matters on solar and lunar eclipses in early Joseon dynasty, and Gwansanggam took this role since King Sejo. Gwansanggam predicted eclipses and submitted the notes for them to the king before 3 months. In 1769, King Youngjo made the rule to submit the notes for solar and lunar eclipses to the king before 5 months. Gwansanggam which belonged to Yejo reported to Yejo in writing after prediction of eclipses, and Yejo submitted it to the king. After receiving the approval from the king, Yejo delivered the dates of the events to Gwanchalsa, Tongjesa, and Yousoo, then, Gwanchalsa delivered them to local governors.

Once solar and lunar eclipses were occurre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tched them and performed Gushik. The ceremony of Gushik was prepared in Guilshikui of Gukjooreui published in 1474, and changed on the place, dress code, personnel, request contents, and so on in Chilimguilshikui of Gukjosokoreui published in 1744. In 1785, the rules on Gushik for solar and lunar eclipses were discussed in the royal court and applied in Daejontongpyon, and the Gushik ceremony for lunar eclipse was newly developed. Local governors who performed Gushik during eclipses reported the status to Gwanchalsa and Tongjesa as Cheopjeong and Seomok. Then, Gwanchalsa and Tongjesa who were reported by the local governors reported to the king for eclipses by Gyebon.

In this study, the processes dealing with solar and lunar eclipses by Gushik in the Joseon dynasty were reviewed. Also, the document administration were clarified on the major events of eclipses from central public offices to the king, from central to local public offices, and from local public offices to the king.